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83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 서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참여(제4조)
- 나. 기본계획(제7조)
- 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제8조)
-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10.4.~10.24.)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수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스마트도시는 주민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는 관련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
4.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다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③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의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도시계획,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위원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참석 수당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실무협의회 운영)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교육)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용 및 대민 응대 방법
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집합교육·서면 평가 및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기본계획)와 관련하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전략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계획 중에 있으나, 본 의안의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미래경제국 스마트도시과 과장 나용수

(담당 : 행정7급 김은정 / ☎ 2600-5292)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사유

-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주민의 참여 규정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기능 규정
- 공공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 가 번 호	2019 - 44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스마트도시과	통보(조치)일		2019. 10. 24.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50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담당자명	김은정	전화번호 02-2600-52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0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스마트도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고려하여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의 협의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개선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별 균형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	위 검토의견 참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19년 11월 5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b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스마트도시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50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담당자명	김은정	전화번호	02-2600-529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p>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협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고려하여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의 협의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개선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별 균형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p>「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1항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정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나(참조 2018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p.20), 성별 균형 도모를 강화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정안을 수정하기로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th> <th style="width: 50%;">개선안 (법령 수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제10조(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td> <td style="vertical-align: top;">제10조(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td> </tr> </tbody> </table>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19년 10월 25일

스마트도시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2017. 12. 26., 2019. 4. 23.>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21.>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

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1. 행정
2. 교통
3. 보건·의료·복지
4. 환경·에너지·수자원
5. 방법·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관광·스포츠
9. 물류
10. 근로·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

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 9. 19.>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